

사회적일자리 사업 신청과 지원내용은 무엇인가?

지난 호에서는 사회적일자리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았다.

이번 호에서는 사회적일자리 사업에 신청하기위한 지원요건과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.

글_ 편집부

사회적일자리 사업의 지원요건

사회적일자리 사업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.

◆ 사회적일자리 사업 참여단체

-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(허가, 지정, 신고, 인증포함)된 비영리법인, 조합, 단체(지부와 사업단 포함)와 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
- 종전에 노동부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는 단체로 이미 지원이 종료되었거나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NGO단독형, 광역형 사업 참여단체도 기업, 지역연계형, 모델발굴형의 요건을 갖추어 신청가능

◆ 사회적일자리 사업의 대상사업

- 개인 또는 사회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하여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교육, 보건, 사회복지, 환경, 문화, 보육, 예술, 관광, 산림보전 및 관리, 간병, 가사지원서비스 및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

※ 우선선정 대상사업

- 환경, 문화 등 미래성장산업
- 시장, 정부 실패로 수용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분야
- 독창적 공공서비스를 민간 위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분야
-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 밀착형 특화모델
- 취약계층에게 일경험을 제공하는 경과적 일자리 모델

※ 신청배제 대상사업

- 가사, 간병, 단순 인력지원 등 파견형태로 운영되는 사업은 신청 배제. 다만, 가사, 간병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도 전략분야 등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신청은 가능

◆ 기타 신청제외 사항

- ※ 취업위약계종 고용계획 비율이 50%에 미달하는 경우
- ※ 신청일 현재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
- ※ 신청인원이 최소고용요건(10명)에 미달하는 경우

사회적일자리 사업 지원내용

◆ 지원인원 : 사업별로 10~100명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, 단체의 역량과 사업 모델이 우수할 경우 심사 시 100명을 초과하여 지원 가능

* 100명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는 경우 : 중앙정부, 지자체, 공공기관 등과 연RP가 확실하거나 대기업의 충분한 물적, 판로지원을 받기로 하는 등 자립구조가 명확한 경우

◆ 지원기간 : 기업연계형, 지역연계형은 1년, 모델발굴형은 6개월 지원

◆ 지원내용

- ※ 참여자 인건비 일부(사회보험료 포함) 지원
 - 최저임금 수준 및 사업자부담분 사회보험료액(8.5%) 등을 고려하여 참여근로자 1인당 월 908,150원 지원

- 단시간 사회적일자리 사업은 참여시간에 비례하여 인건비 등 지원

※ 경영컨설팅 등 자립기반 조성 지원

- 사회적기업 전환을 위한 경영컨설팅, 지자체, 기업과의 연계 등 지원
- 수익모델 발굴을 위한 사업개발, 연구비 등을 심사를 통해 추가 지원

